



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20.12.1.>

### 산후조리업 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		처리기간	5일		
신고인	성명			생년월일				
	주소			(전화번호: )				
시설 개요	명칭							
	소재지			(전화번호: )				
	대표자			생년월일				
	개원연월일			정원(임산부/영유아)		명 / 명		
시설 설비 내역	임산부실			m <sup>2</sup>		영유아실		m <sup>2</sup>
	모유수유실			m <sup>2</sup>		급식시설		m <sup>2</sup>
	세탁실			m <sup>2</sup>		목욕실		m <sup>2</sup>
	화장실			m <sup>2</sup>		사무실		m <sup>2</sup>
	그 밖의 시설							m <sup>2</sup>
	설비내역							
직원	계	간호사	간호조무사	영양사	조리원	미화원	기타	
	명	명	명	명	명	명	명	

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210mm × 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



(뒤쪽)

<p>신고인 (대표자) 제출서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(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) 및 설비구조내역서</li> <li>2. 종사자의 자격증(간호사 면허증, 간호조무사 면허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합니다) 사본</li> <li>3. 「모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(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li>4.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같은 영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</li> <li>5.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</li> <li>6.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</li> </ol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자등록증</li> <li>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3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 시설 등 완비증명서</li> <li>4.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</li> </ol>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(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)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 리 절 차

